

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백 남 환 의원)

의안 번호	23-117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: 2023. 10. .

발의자: 백남환, 권인순, 고병준, 김승수,
오욱자, 이상원, 차해영, 채우진,
한선미, 홍지광

1. 개정이유

어르신들의 사회적·문화적 커뮤니티인 경로당에서 복지증진에 힘쓰는 경로당 회장 등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역할에 대한 자긍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경로당 회장 등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고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감을 제고하고,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조문을 신설함 (안 제9조)

3. 관계법령

가. 노인복지법 제24조

나.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붙임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: 2023. 8. 21. ~ 8. 28.

나. 의견제출: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지역봉사지도원)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「노인복지법」 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② “지역봉사지도원”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(경로당 회장 등)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.

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④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
2.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
3.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⑤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「노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.

제13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9조(지역봉사지도원)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「노인복지법」 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“지역봉사지도원”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(경로당 회장 등)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.</u></p> <p><u>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</u> <u>2.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</u> <u>3.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</u> <u>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</u>

제9조 ~ 제12조 (생 략)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서 시
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
정할 수 있다.

⑤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
「노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8조
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.

제10조 ~ 제13조 (현행 제9조부
터 제12조까지와 같음)

<삭 제>

【관 계 법 령】

노인복지법

[시행 2022. 3. 22.] [법률 제18609호, 2021. 12. 21., 일부개정]

제24조(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15. 1. 28.>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
2. 도로의 교통정리, 주·정차단속의 보조,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
3. 충효사상,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
4.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
- 4의2.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
5.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

노인복지법 시행령

[시행 2023. 1. 1.] [대통령령 제32925호, 2022. 9. 27., 일부개정]

제18조(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.

1.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
2. 질병·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
3.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

③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“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”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. <개정 2008. 7. 24., 2018. 4. 24.>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
2.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
3. 자원봉사활동 기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(앞쪽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제9조제3항,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2024년 최저임금인 9,860원 기준, 월10회 활동으로 1인당 월 활동비 100,000원 산정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연도						
세입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	190,800	190,800	190,800	190,800	190,800	954,000
	소계(b)	190,800	190,800	190,800	190,800	190,800	954,000
□ 총 비용(a-b)		-190,800	-190,800	-190,800	-190,800	-190,800	-954,00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연도						
의존 재원	소계	-	-	-	-	-	-
	자체 수입	190,800	190,800	190,800	190,800	190,800	954,000
	지방세수입, 세외수입 등	190,800	190,800	190,800	190,800	190,800	954,000
	지방채	-	-	-	-	-	-
	민간자본	-	-	-	-	-	-
	기타	-	-	-	-	-	-
	합계	190,800	190,800	190,800	190,800	190,800	954,000

5. 덧붙이는 의견

6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차재현
연락처	02-3153-8863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- 100,000원(1인당 월 활동비) × 159개소(1개소 신설예정) × 12개월